



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신청하세요

III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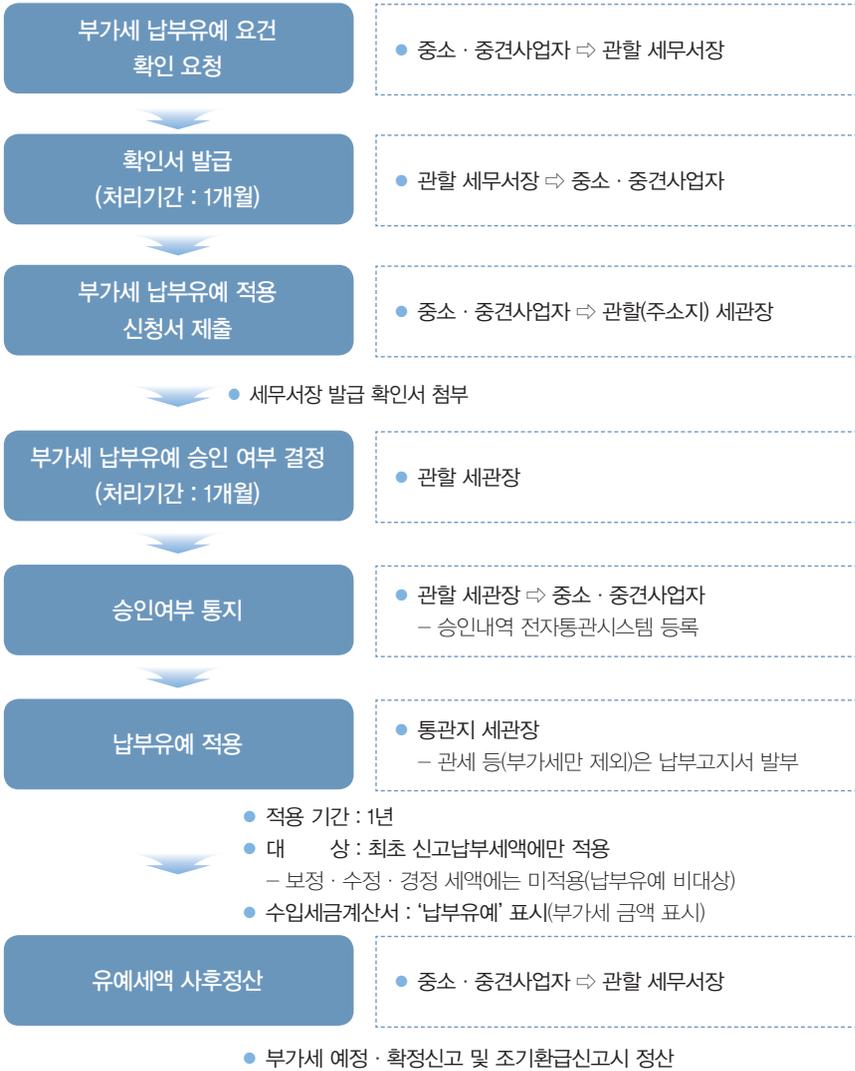
- ▶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는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. (부가세법 제50조의2)



- ▶ 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 (부가세법 시행령 제91조의2)

- ① 중소기업·중견 제조기업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 및 제10조)
- ② [중소]수출액 비중 30%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
[중견]수출액 비중 50% 이상
- ③ 최근 3년간 계속사업 경영
- ④ 최근 2년간 관세 및 국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
- ⑤ 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 사실이 없어야 함
- ⑥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이 없어야 함

▶ 부가세 납부유예 적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
문의처

☎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-481-7754